

이 곳을 천천히 개방하여 주십시오.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06750

"청렴과 친절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신고 대상 : '21년 12월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 소득)
- 신고·납부기한 : '22년 5월 2일(월)까지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신고·납부
- 납세지 : '21. 12. 31.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코로나19 피해 법인 기한 연장 안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 등의 경우 신고기한 연장도 허용 ▶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
납부기한 직권 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8. 1.(월)까지 납부, 신고는 5. 2.(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1 과세체계 개편(독립세 전환)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과세표준 ¹⁾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 공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¹⁾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 단,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21. 1. 1. 이후 신고분부터)

2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2.2%	4,200만원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3천억 초과	2.5%	94,200만원	65억5천8백만원 + (3천억 초과 × 2.5%)

3 세액 계산(지방세법 §103조의21)

$$\text{법인지방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 =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감면}^{1)} + \text{가산세}^{2)} - \text{기납부세액}^{3)}$$

¹⁾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 규정 없음

²⁾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³⁾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4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¹⁾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 ²⁾ 서류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3호의2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44호의6
	⑦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⑧ 특별정수세액명세서 (특별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43호의5
	⑨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43호의4
	⑩ 소금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43호의9, 43호의 10
	⑪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43호의13

¹⁾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²⁾ ②~⑥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